

#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2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함.

## 주요내용

가.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공무원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

- “시 소속공무원”을 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3조제2항제1호).
- “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”을 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변경하여 규정함(안제3조제2항제2호).
- 관할공직자유관단체의 임·직원과 그 퇴직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(안 제3조제2항제3호).

나.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.

다. 조례내용 중 어렵거나 부적절한 낱말을 알기 쉬운 단어로 변경하여 규정함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, 제9조,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제19조, 「별표1」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입법예고 생략

○ 근거 「안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입법예고의 예외)

○ 사유 : 개정된 법령의 단순한 반영으로 예고의 필요성이 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직자윤리법”을 “「공직자윤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, 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”을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”를 “재산등록사항의 심사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”을 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.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재적위원”을 “출석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신설한다.

제9조(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·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감사담당관실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감사담당관실 박 경 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감사담당 이 기 용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승 범 (행정 2817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공직자윤리법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공직자윤리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<u>1인</u>을 포함한 <u>5인</u>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<u>3인</u>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(<u>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</u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2. <u>2인</u>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1명과 시 소속공무원(이하 “소속공무원”이라 한다)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<u>3인</u>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2.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<u>2인</u>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 <u>1명</u>----- <u>5명</u>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3명</u>----- ----- 「<u>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</u>」 ----- ----- -----</p> <p>2. <u>2명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3명</u>----- -----</p> <p>2. ----- <u>2명</u>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.</p> <p>1. <u>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.</p> <p>1. <u>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</p> <p>1. <u>재산등록사항 심사</u>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.</p> <p>1. <u>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</u> -----</p> <p>2. <u>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</u>----- -----</p> <p>3. <u>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<u>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</u>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<u>제9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(생략)</u></p>	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출석위원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</u>-----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(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(현행 제9조와 같음)</u></p>